



08. 「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」이란?

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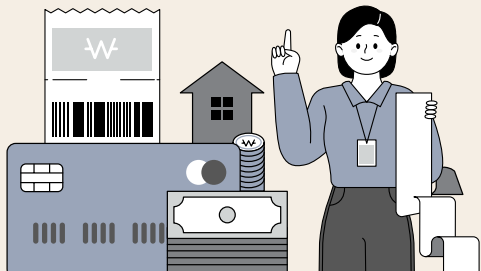
국세청에서는 영세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「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」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.

메인



09. 국세청 배포 프로그램의 편리한 점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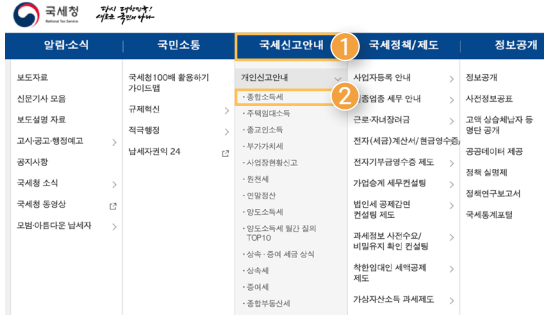
- I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(세금)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자료를 장부에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.
- II 자산대장에 사업용 자산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
- III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식*이 자동으로 작성되어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*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,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
- IV 영업현황표를 통해 월별·과목별 수입, 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국세청 배포 프로그램은 어디서 내려받나요?

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서, 업종별 작성 사례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.

또한,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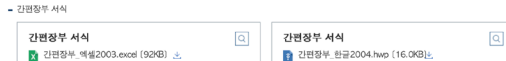
간편장부 구입 및 문의는 어떻게 하는가?

- 간편장부는 아래의 간편장부 작성프로그램 또는 간편장부 서식을 다운받거나,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



간편장부 프로그램 사용 안내(동영상)
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fr3h3z33e>

- 사용하시기 전 우측의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설명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pc환경설정 외에 개인컴퓨터(실용형)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가 아니라, 개별적인 사양 및 연차가 어려운 점 경해 바랍니다.
- 본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소득세의(044-204-3268), 세법상담은 국세청상담센터(국번없이 126 - 2 - 4번(종합소득세))



* 엑셀파일의 간편장부 서식을 사용하면 자동집계가 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고금리 · 고물가 시대 극복을 위한

간편장부 제도안내

간편장부 작성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
국번없이 ☎ 126 [국세상담센터]에서
2번 ▶ 4번을 선택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

영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제도안내



01. 간편장부란?

영세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 지식이 없는 사업자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제정·고시한 장부입니다.



02.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.

다만 의사,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개업 여부 및 전년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업종 구분	기준 수입금액
가. 농업·임업 및 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(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),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, 그 밖에 '나' 및 '다'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	3억원 미만
나.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, 수도·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 재생업, 건설업(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)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(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), 운수업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, 금융 및 보험업, 상품중개업, 욕탕업	1억5천만원 미만
다.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, 부동산업('가'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 시설관리·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, 협회및단체,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, 가구내 고용활동	7천5백만원 미만



03. 간편장부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?

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합니다.

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정식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


04.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?

- I 사업 실상을 반영한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어 담세력을 고려한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II 사업 관련 이자비용, 감가상각비 등을 장부에 기재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.
- III 사업이 어려워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



05.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?

- I 실제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.
- II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「장부의 기록·보관 불성실 가산세」를 부담합니다.

* 해당 과세기간 신규개시 사업자, 전년도 수입금액 4,800만원 미달자,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



06.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?

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으로 거래내용, 거래처 매출액 등 수입과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과 유·무형 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.

보다 자세한 작성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* 국세청 홈페이지 (www.nts.go.kr) ▶ 국세신고안내 ▶ 종합소득세 ▶ 간편장부 안내

장부에 수입·비용으로 계상한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(세금 계산서, 신용카드전표 등)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

간편장부 서식

연월차	과제과목	과제내역	과제처	과수입(매출)		과 비용 (유·무형 자산 매입(매출))		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(매출)		과 비고
				금액	부가세	금액	부가세	금액	부가세	
1.5	매출	○○○○매	유무	10,000,000	1,000,000					세금
1.15	상품	○○○○매	유무			5,000,000	500,000			세금
1.20	임대비	거래처명	○○○○매			200,000				카드용



07. 간편장부는 어디서 구입하나요?

간편장부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으며

* 국세청 홈페이지 (www.nts.go.kr) ▶ 국세신고안내 ▶ 종합소득세 ▶ 간편장부 안내

사업자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국세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이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(version 3.0) 간편장부 프로그램 설명서

간편장부작성프로그램 (version 3.0).zip (7.62KB)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(version 3.0) 사용... (5.68KB)

간편장부 프로그램 사용 안내(동영상)

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1fyJh3z3Jb0>

· 사용하시기 전 우측의 간편장부 프로그램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설명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pc환경설정 외에 개인컴퓨터 설정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가 아니므로 개별적인 상담 및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.

· 본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소득세과(044-204-3268), 세법상담은 국세청상담센터(국립연예 126-2 → 4번(종합소득세))

· 간편장부 서식

간편장부 서식 간편장부 서식

간편장부_백설2003.excel (92KB) 간편장부_한글2004.hwp (16.0KB)